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0] <개정 2022. 4. 14.>
자동차운행정지표지(제64조제1항 관련)

자동차운행정지

자동차등록번호:

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합니다.

※ 이 표지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에 따른 점검·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,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,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합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

비고

1. 바탕색은 백색으로, 문자는 적색으로 합니다.
2. 이 표지는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입니다.

134mm×190mm

(인쇄용지(특급) 120g/m²)